

보도 일시	2022. 11. 23.(수) 09:00 2022. 11. 23.(수) 석간	배포 일시	2022. 11. 23.(수) 09:00
담당 부서 <총괄>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양현수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이철호 (044-202-8904)

11월 23일 ‘제32회 현장점검의 날’ 식품제조업체 등 2천여 개소 ‘불시감독’ 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제32회 ‘현장점검의 날(11.23.)’을 맞아, 지난 10월 23일 예고*한 대로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식품 혼합기 등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할 가능성이 많은 유사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 등에 대해 불시감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집중 단속기간) <1차>10.24.~11.13. 자율점검·개선 → <2차>11.14.~12.2.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 (28종 유해·위험 기계·기구·작업) ▲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연삭기(연마기),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인쇄기, ▲지게차, ▲지붕·대들보 작업, ▲사다리 작업, ▲화물운반 트럭 작업, ▲배합기, ▲굴착기 작업, ▲후크·샤클

- ❖ 11.14.~12.2. 불시감독 대상으로 식품제조업체 등 위험사업장 2,000여 개소 확정
- ❖ ①위험 기계 등의 자율 점검한 내용과 개선 여부,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법적 의무 이행 등을 중점 확인 중

식품제조업체 등 위험사업장 2,000여 개소를 확정한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천여 명(누적)을 투입해 불시감독(11.14.~12.2.)을 일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불시감독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했는지 우선 확인하고, 현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다시 확인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스스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도 들여다보면서, 이들의 역할 재정립도 지도하고 있다.

〈 안전보건관계자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주요 역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괄·관리)	관리감독자 (지휘·감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력)
▶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및 개선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안전보건교육	▶ 노·사동수 구성, 회의 개최(정기수사) ▶ 노·사 →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심의·의결 ▶ 위원장 → 회의결과 공개 ▶ 노·사 → 심의·의결사항 이행
▶ 재해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 ▶ 보호구·안전장치 등 적격품 확인	▶ 보호구·방호장치 점검, 착용사용 지도 ▶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처치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 ❖ 10.24.~11.13. 식품제조업 등 2,899개 업체 점검하고 1,521개(52.5%) 업체에 시정 요구
- ❖ 자율점검 통해 스스로 위험 요소를 개선·완료한 업체는 1,378개소(47.5%)

‘현장점검의 날’인 오늘(11.23.),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개선 기간인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총 2,899개 업체를 점검하고 1,521개(52.5%) 업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10.24.~11.13. 현장점검지도	계	50인 미만				50인 이상
		소계	10인 미만	10~29인	30~49인	
점검 업체 수	2,899개	2,360개	888개	1,158개	314개	539개
위반 업체 수	1,521개	1,241개	444개	616개	181개	280개
위반 비율	52.5%	52.6%	50.0%	53.2%	57.6%	51.9%

* 위반비율=(위반사업장÷점검사업장) ×100

10개 업체 중 5개(52.5%) 업체는 자율점검을 했더라도 미진한 부분이 추가로 확인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업체도 절반 이상(51.9%)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을 찾아내 시정명령을 통해 모두 개선을 완료했다.

〈 10.24.~11.13. 자율점검·개선 사례 〉

- ▶ (A기업) 배합기 원료 투입구의 덮개를 열 때 기계가 정지되도록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추가로 안전망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신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방호장치를 이중으로 설치
- ▶ (B기업) 근로자가 79명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사업장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수시로 위험요인을 발굴한 후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개선

이번 자율점검·개선 기간에는 특히 근로자 안전을 위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방호조치를 한다거나, 법적 설치·운영 의무가 없음에도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업체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 ❖ 11.14.~12.2. 불시감독은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대표자 입건 등 예외 없이 적용
- ❖ 불시감독 대상에 '50인 이상 업체' 상당수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 안전조치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간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사업주를 입건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기업에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불시감독 대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업체가 상당수 포함되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적인 안전 조치 준수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추락·끼임 등)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담당 부서 <총괄>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양현수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주무관	이철호 (044-202-8904) 김정환 (044-202-8907) 남영우 (044-202-8908)
<공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본부 사업총괄부	책임자	부 장	유영수 (052-703-0611)
		담당자	차 장	김해현 (052-703-0614)